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일부개정안

1. 개정 사유

- 기존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액을 2021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2.5%)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 2022년 신규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에 필요한 연도별 기준소득월액 재평가율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존 수급자의 연금액 조정

- 기본연금액 : 2.5% 증액
- 부양가족연금액 : 2.5% 증액

* 배우자 : 연 263,060원 → 연 269,630원(6,570원 ↑)

* 자녀·부모 : 연 175,330원 → 연 179,710원(4,380원 ↑)

○ 신규 수급권자의 연금액 산정

- 전체가입자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A값") : 2,681,724원

* 2021년 적용 A값(2,539,734원) 대비 141,990원 상승 (5.6% ↑)

- 개인별 기준소득월액 평균액("B값") 산정을 위한 재평가율

재평가연도	'88년	'89년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재평가율	7.161	6.331	5.513	4.609	3.999	3.541	3.119	2.880	2.641	2.388	2.127	2.078
재평가연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재평가율	2.109	2.071	2.031	1.899	1.790	1.712	1.656	1.599	1.532	1.497	1.470	1.418
재평가연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재평가율	1.385	1.353	1.312	1.274	1.232	1.181	1.138	1.100	1.056	1.000		

- 적용 기간 : 2022년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00호

「국민연금법」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호, 2021.1.22.)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월 00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일부개정

제1호의 제목 중 “2021년도”를 “2022년도”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재평가율 결정

재평가연도	재평가율	재평가연도	재평가율	재평가연도	재평가율
1988	7.161	2000	2.109	2012	1.385
1989	6.331	2001	2.071	2013	1.353
1990	5.513	2002	2.031	2014	1.312
1991	4.609	2003	1.899	2015	1.274
1992	3.999	2004	1.790	2016	1.232
1993	3.541	2005	1.712	2017	1.181
1994	3.119	2006	1.656	2018	1.138
1995	2.880	2007	1.599	2019	1.100
1996	2.641	2008	1.532	2020	1.056
1997	2.388	2009	1.497	2021	1.000
1998	2.127	2010	1.470		
1999	2.078	2011	1.418		

나. 적용대상

-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지급이 개시되는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

제2호 제목 중 “2021년도”를 “2022년도”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조정액란과 적용기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기본연금액

- 조 정 액 : 2.5% 증액
- 적용기간 : 2022년 1월분부터 2022년 12월분까지 적용

나. 부양가족연금액

- 조 정 액 : 2.5% 증액
- 배 우 자 : 연 263,060원 → 연 269,630원 (6,570원 ↑)
- 자녀·부모 : 연 175,330원 → 연 179,710원 (4,380원 ↑)
- 적용기간 : 2022년 1월분부터 2022년 12월분까지 적용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대조표>

현행						개정안					
1. 2021년도 ----- 가. 재평가율 결정						1. 2022년도 ----- 가. 재평가율 결정					
재평가 연도	재 평 가율	재평가 연도	재 평 가율	재평가 연도	재 평 가율	재평가 연도	재 평 가율	재평가 연도	재 평 가율	재평가 연도	재 평 가율
1988	6.782	1999	1.968	2010	1.392	1988	7.161	2000	2.109	2012	1.385
1989	5.996	2000	1.997	2011	1.343	1989	6.331	2001	2.071	2013	1.353
1990	5.221	2001	1.962	2012	1.312	1990	5.513	2002	2.031	2014	1.312
1991	4.365	2002	1.924	2013	1.281	1991	4.609	2003	1.899	2015	1.274
1992	3.788	2003	1.798	2014	1.242	1992	3.999	2004	1.790	2016	1.232
1993	3.354	2004	1.696	2015	1.206	1993	3.541	2005	1.712	2017	1.181
1994	2.954	2005	1.621	2016	1.167	1994	3.119	2006	1.656	2018	1.138
1995	2.727	2006	1.569	2017	1.119	1995	2.880	2007	1.599	2019	1.100
1996	2.501	2007	1.515	2018	1.078	1996	2.641	2008	1.532	2020	1.056
1997	2.261	2008	1.450	2019	1.041	1997	2.388	2009	1.497	2021	1.000
1998	2.015	2009	1.417	2020	1.000	1998	2.127	2010	1.470		
						1999	2.078	2011	1.418		
나. 적용대상 ○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의 -----						나. 적용대상 ○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					
2. 2021년도 연금액 조정 가. 기본연금액 ○ 조정대상 : (현행과 같음) ○ 조 정 액 : 0.5% ---- ○ 적용기간 :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분까지 적용						2. 2022년도 연금액 조정 가. 기본연금액 ○ 조정대상 : (현행과 같음) ○ 조 정 액 : 2.5% ---- ○ 적용기간 :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분까지 적용					
나. 부양가족연금액 ○ 조정대상 : (현행과 같음) ○ 조 정 액 : 0.5% ---- - 배 우 자 : 연 261,760원 → 연 263,060원 (1,300원 ↑) - 자녀·부모 : 연 174,460원 → 연 175,330원 (870원 ↑) ○ 적용기간 :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분까지 적용						나. 부양가족연금액 ○ 조정대상 : (현행과 같음) ○ 조 정 액 : 2.5% ---- - 배 우 자 : 연 263,060원 → 연 269,630원 (6,570원 ↑) - 자녀·부모 : 연 175,330원 → 연 179,710원 (4,380원 ↑) ○ 적용기간 :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분까지 적용					